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-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밸류웨이언금저축증권투자신탁[주식]
- **변경 사항**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변경
- **효력발생일**: 2024. 8. 29.
- **변경 내용**: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변경	온라인슈퍼(S)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	온라인슈퍼(S) :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(S-T 및 S-P 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변경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“연금저축계좌”의 가입자 중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	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“연금저축계좌”의 가입자 중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(S-T 및 S-P 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			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변경	온라인슈퍼(S)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	온라인슈퍼(S) :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(S-T 및 S-P 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다른 클래스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 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변경	2) 종류별 가입자격 ③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“연금저축계좌”의 가입자 중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</u>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	2) 종류별 가입자격 ③ 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 :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“연금저축계좌”의 가입자 중 <u>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(S-T 및 S-P 클래스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u>